

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검토과정

- 제출일자 : 2019년 10월 25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자치행정국장)
- 회부일자 : 2019년 10월 31일

2. 주요내용

-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위임사항 반영(안 제5조제2항 제3호, 안 제7조, 안 제50조)
-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일탈 조항 삭제(안 제5조제2항제4호, 안 제31조)
- 개별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조문 정비(안 제28조)

3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

- ▶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) 및 같은 법 시행령, 행정안전부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」의 개정사항 및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▶ 안 제5조에서는 현행 조례에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삭제하고,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- 법 제11조⁵⁾에서는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임의로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 위임범위 일탈에 해당 된다는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 사항⁶⁾을 반영한 것임.
- ▶ 안 제7조에서는 법 제92조⁷⁾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⁸⁾에 따라

5) 제11조(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(이하 "공유재산심의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
2.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

6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2041(2019. 4. 30.)호

7) 제92조(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,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,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
8) 제52조(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)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"개정된 가격"이란 법 제46조에 따

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, 공유재산 운영 중요사항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그 양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음. 이는 상위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임.

- ▶ 안 제28조에서는 「초지법」 제18조⁹⁾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은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규정하였음. 이는 개별법에서 공유지의 대부료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.
- ▶ 안 제30조에서는 토석채취료 산정기준을 m^3 당 원석시가를 곱한 금액의 1천분의 50으로 되어있던 규정을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, 기타 토석 매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산지관리법」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음.
- 토석의 채취료는 통상적인 사용·대부가 아닌 매각에 해당하므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는 매각절차에 따르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¹⁰⁾을 반영한 것임. 참고로 대구시의

라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. ② 법 제47조에 따른 증감보고서 및 현재액보고서는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주민에게 공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9) 제18조(국유지·공유지의 대부료)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국유지·공유지의 대부료는 「국유재산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(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)의 100분의 1 이내에서 국유지는 대통령으로, 공유지는 재산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0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2041(2019. 4. 30.)호

경우 토석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재산은 없음.

- ▶ 안 제31조에서는 건물대부료 산출 시 부지평가액을 충별로 감경비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삭제하고, 건물과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을 행정안전부의 개정 권고사항¹¹⁾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,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〈 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(행안부 고시) 별표3

〉

○ 건물 공용면적 산출 산식

$$\frac{\text{해당건물의}}{\text{총 공용면적}} \times \frac{\text{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}}{\text{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}}$$

○ 부지 공용면적 산출 산식

$$\frac{\text{해당부지의}}{\text{총 공용면적}} \times \frac{\text{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(전용·공용면적 합계)}}{\text{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}}$$

- ▶ 안 제40조에서는 제8항에 규정되어 있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자를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3조¹²⁾에 따른 농업인으로 규정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였음.
- ▶ 안 제50조에서는 “관사”의 용어 정의를 시장·부시장 또는 그 밖의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하였음.

11)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-2041(2019. 4. 30.)호

12) 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2. "농업인"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-
- 이는 현행 조례에서 소유하는 공용주택으로 규정된 관사의 범위를 임차하는 공용주택까지 포함하도록 하여 관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
※ 대구시 관사 운영 현황 : 보유 5개 / 임차 12개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, 2019년 1월부터 추진된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제 정비에 따른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공유재산 관리 ·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.

○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